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91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김기웅
구자근 · 엄태영 · 이성권
강선영 · 박충권 · 김미애
진종오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울산·경남·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 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 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7. (생 략) ② · ③ (생 략)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협조) ①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 장소를 포함한다)</u>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